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나331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2나3311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63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김수정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 선고 2024. 6. 2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가단63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① 제1심 공동피고 B이 피고에게, 2015.경 5억 원 이상을 증여한 계약, 2008년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피고가 매수한 서울 송파구 D 소재 E호 아파트 및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의 매수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39,80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20. 10.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③ 서울 종로구 H건물 I호에 관하여 200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위 공동피고에 대한 항소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2023. 8. 21.자 항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분리 ·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오기임이 분명한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 제12행의 "2018나28192"를 "2018나21892"로, "39,605,430원"을 "39,805,430원"으로 각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 2015년경부터 인천 중구에 있는 호텔에서 3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을 받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8년경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중연

판사김경년

판사이종욱

1) 원고가 제출한 소장, 항소장 및 그 밖의 서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최대한 선해한다.